

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'99. 11. 19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'98. 10. 2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 (안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동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토지조사계장이”을 “업무담당주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적과장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이 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①.....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